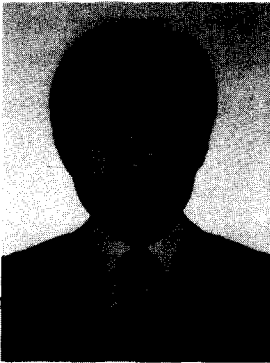


주류산업의 면허개방과 발전과제



이 상 호

<세종대학교 교수>

■ 목 차 ■

1. 산업규제의 의의와 영향
 - (1) 산업규제의 의의
 - (2) 산업규제의 폐해
 - (3) 시장개방과 진입규제
2. 주류산업 개황
 - (1) 주류산업 개황
 - (2) 주류유통업 현황
3. 주류산업 규제완화의 완화
 - (1) 주류산업규제완화의 의의
 - (2) 주류산업 규제의 폐해
 - (3) 주류산업 규제완화의 기대효과
4. 주류산업 발전과제 및 대책

1. 산업규제의 의의와 영향

통상적인 의미에서 산업규제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특정 산업에 진입을 제한할 수 있고 특정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도 있으며 생산량을 통제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는 시장경제원리에 직접적으로 상충됨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를 경제운용의 이념으로 표방하고 있는 국가에서 선후진국을 불문하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보편적으로 용인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산업규제의 역사는 1960년대 초 정부주도에 의한 경제개발 계획의 추진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수있는데 유교적 전통하의 가부장적인 관료주의 정서속에 큰 마찰없이 받아들여졌고 그 이후 경제운용의 기본 원리로 정착되었다. 그동안 경제개발 과정에서 빈약한 자원을 전략적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독과점 이윤을 통해 자본의 축적을 확대하는 한편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개발전략 하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통제는 불가피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장경제의 양대원리인 이기심의 발휘와 자유로운 경쟁중 후자의 부재로 인하여 파행적 형태의 시장 질서가 형성되게 되었다. 또한 독과점적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가격규제, 시설규제, 판매규제, 사업영역의 할당과 지역분할등 보완적 시책이 필연적으로 실시될 수 밖에 없었으며 이것이 경쟁을 더한층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다. 더욱이 이러한 규제가 각 산업의 특성과 구조와는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비약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자원과 부의 분배에 있어서의 왜곡과 바람직한 기업윤리관의 결여와 같은 부정적인 현상들이 노정되고 있다.

(1) 산업규제의 의의

정부의 산업규제가 합리화 될 수 있는 당위성은 시장기능의 실패를 보완하고 과당경쟁을 방지하며 공공성을 제고하고 유망유치산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다. 시장기능이 완벽할 경우에는 시장의 자율적 조정으로 효율적 자원배분이 보장되지만 시장기능의 실패가 나타날 때는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기능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에는 진입규제, 가격규제, 이윤규제 등이 있으나 주류산업과 관련된 정부규제는 인허가제도로 대표되는 진입규제이다. 이는 정부가 특정산업에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제한한다는 지 사업자의 선택결정에 관여함으로써 기업의 실질적인 경제적 우위성에 관계없이 기업의 수, 시설규모, 활동지역과 사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진입규제의 이론적 정당성은 자연독점 및 규모의 경제, 과당경쟁의 방지, 공공성의 제고, 유망유치산업의 보호 등의 측면에서 검토 될 수 있다.

가. 자연독점 및 규모의 경제

자연독점 산업은 막대한 고정비용을 요하는 산업으로 상당히 큰 산출량 수준에 이르기까지 평균생산비용이 감소하는 산업을 말하는 것으로 전화나 철도와 같은 산업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자연독점 산업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허용되면 중복투자에 의한 낭비, 파멸적 경쟁, 경쟁에서 생존한 기업에 의한 독과점적 가격정책과 같은 비효율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를 회피하고 대규모 생산의 장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진입규제와 가격규제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자연독점에 대한 정부규제는 최소비용으로 생산을 이룩하게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독점 산업에 대한 진입규제는 어느정도 타당성을 갖고 있으나 정부의 규제가 항상 최선의 자원배분 상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진입규제의 당위성이 확보되는 자연독점 산업

에서도 기술혁신으로 비용이 절하되거나 수요증대로 인한 시장여건의 변화는 독점 기업에 의한 규모의 경제효과를 소멸시킬 수 있다. 예를들면 자연독점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전기·통신산업에서도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전화망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크게 낮아지게 됨으로써 많은 나라에서 점차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나. 과당경쟁의 방지

수요 규모가 작은 시장에 기업이 너무 많이 존재하면 약탈적 가격경쟁과 같은 과당경쟁이 유발되게 된다. 이는 진입비용이 아주 작아 영세업체의 난립이 가능한 산업에서 발생하기 쉬운데 과당경쟁의 결과 만성적인 공급과잉과 약탈적 가격경쟁에 의한 수익부족 상태가 계속되어 무분별한 진입과 퇴출이 사회적 비용으로 나타나게 되며 산업의 영세성으로 안전성이나 서비스의 질에도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주류제조 면허제도는 주목적이 이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진입규제에 따른 경쟁제한과 기타 보완적인 규제의 결과 발생하는 효율성의 상실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경쟁관계를 통한 이점이 과당경쟁으로 인한 단기적 손실을 상회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과당경쟁의 경우 진입규제보다 공정거래제도를 확립하여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다. 공공성의 확보

공공의 이익확보를 위해 정부규제가 필요한 경우는 필수적인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예로 전력과 전기통신서비스를 들 수 있다.

전기통신서비스 산업의 경우 시내통화서비스는 이 서비스의 필수적인 성격에 비추어 전국민이 고른 서비스를 받는 것이 형평성의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서비스의 공급가격을

원가이하로 낮추어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확대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손실은 다른 서비스 분야(장거리 통신 서비스)에서의 초과이윤으로 보조하게 된다. 그런데 초과이윤이 보장되는 분야에 진입을 자유화하면 필수적인 서비스에 대한 보조가 불가능하여 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므로 진입규제가 필요한 것이다.

라. 유망유치 산업의 보호

어떤 산업의 경우 발전 초기단계에서는 비용조건이나 수요조건이 좋지 않아 그 산업에 투자하려는 경제적 유인이 미흡하나 생산활동이 지속된다면 비용조건이 개선되거나 수요의 증대에 따라 전반적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진입규제, 가격규제를 행함과 동시에 해당 산업분야를 보호,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망유치 산업보호는 개발도상국에서 개발초기에 특정한 산업분야를 일정기간 동안 보호 육성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는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흔히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유망유치산업 보호정책은 보호받는 산업이 적극적으로 경쟁력 확보와 효율의 극대화를 추진하지 않고 각종 특혜와 기득권만을 향유하려고 할 경우 오히려 사회적 비효율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보호받는 산업은 허약체질의 산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유망유치산업 보호가 정당화 될 수 있는 경우에도 한시적 보호라는 정책의 원래 취지를 감안하여 수시로 보호의 필요성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2) 산업규제의 폐해

정부의 산업규제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부규제는 많은 비용과 비효율을 수반하게 된다. 정부규제 가운데 진입규제의 폐해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진입규제의 폐해로는 무엇보다도 경쟁의 제한에 따른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들 수 있다. 진입규제는 기존기업의 독과점력의 증대로 인하여 경쟁산업에서 처럼 효율성을 제고시키려는 인센티브가 결여되어 산출수준의 저하로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기존 기업으로 하여금 방만한 경영을 조장함으로써 비효율성과 함께 적절하지 못한 투입요소의 사용에 따른 내부적 효율성의 저하도 초래된다.

그리고 진입규제는 통상 독점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윤율 규제 및 가격규제가 병행하여 수행되는데 이윤율 규제는 보통 자본에 연계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윤율 규제하의 독점기업은 자본노동 결합비율을 일반적으로 효율적인 자본노동 결합비율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하는 경향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생산요소의 투입에 있어 왜곡현상이 불가피하게 되어 생산구조의 비효율이 초래된다.

나. 과잉생산설비

수요가 제한된 시장에서 과당경쟁의 방지를 목적으로 진입규제가 이루어질 경우 시장 여건의 변동으로 추가수요가 생길 때에는 잠재적 진입기업에게 진입의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기존기업이 수익률 규제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유희설비를 보유하고 추가 수요발생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급조절을 진입규제의 기준으로 하는 경우 추가 수요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기존공급과 기존업자의 추가공급 능력으로 감당하게 된다. 따라서 비효율적인 기존기업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신규기업의 진입을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

게 된다.

다. 자의성의 개입

사업자의 선택 내지는 배제를 위한 기준설정에 있어서 규제기관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인허가권의 남용이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진입규제의 집행과정에서 자의적 선택에 의해 기존기업을 보호하는 경향이 많다. 즉 시장의 수요와 생산비용 및 기술조건이 변화하여 규제해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규제가 타성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게 된다. 규제산업의 기존기업은 이러한 특혜적 보호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데 이를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보면 낭비요소가 되는 것이다.

(3) 시장개방과 진입규제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부주도하의 고도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산업규제 정책의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유망유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출의 증진에 의한 경제의 성장이었다. 이러한 정책으로 규제산업은 국내시장에서 독과점적인 위치를 향유하면서 성장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의 확대 및 국제무역 여건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내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안되는 환경에 처해 있으며 실제 수입개방과 외환의 자유화 및 자본시장 개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국제무역장벽의 제거를 위한 다자간 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는 국내산업에 대한 보호조치의 철폐와 함께 국내시장 접근,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무차별 원칙등이 논의되고 있어서 우리 경제도 획기적인 개방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우루과이라운드」의 최종타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선진 각국의 개방압력에 의한 쌍무협정을 통해 국내시장의 대외 개방은 불가피하다 하겠다.

국내시장의 개방은 국내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산업구조의 개편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는 국내산업이 자유경쟁 체제에서 높은 효율과 생산성을 확보하고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며 국내산업이 보호와 규제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채 대외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국내산업의 피해가 크게 나타날수 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

2. 주류산업 개황

과거 우리나라의 주류산업은 소규모업체가 난립하여 제품의 질저하, 유통질서 문란 및 세수확보의 어려움과 같은 문제가 60년대에 있었으며 이에 정부는 70년대에 들어 징세 목적상 주세법을 정비함으로써 주정배분, 가격규제, 제조 및 판매면허, 지역판매등 각종 규제가 엄격히 실시되어 왔다. 1980년대 후반부터 정치의 민주화에 따른 경제민주화의 욕구와 국내시장의 내외 개방에 따른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의 필요성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전체적인 정부규제의 완화 방침에 따라 정부의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1) 주류산업 개황

우리나라의 주류소비 패턴을 보면 60년대와 70년대에 주류소비의 주를 이루던 탁주, 청주등의 전통주 소비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소주와 맥주가 상대적인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80년대 들어와서는 위스키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1991년말 주류 총매출액 약 1조3000억 중에 맥주가 43.0%로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이 희석식 소주 31.3%, 탁주 9.6%, 위스키 6%, 기타 10.1%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

어 맥주가 대중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같은 주류소비 패턴의 변화는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 및 기호변화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주류소비의 고급화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주류 수출입은 수입초과가 계속되는 실정이다. 수출은 맥주와 소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1991년말 통관기준 수출액은 맥주가 9,467천달러, 소주가 5,191천달러 이었다. 이는 1990년도에 비하여 각각 30.4%와 33.8%의 높은 수출신장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반면 수입은 포도주가 3,413천달러, 위스키류가 39,033천달러로 포도주는 90년에 비하여 30%정도 감소한 반면 위스키류는 13.3%의 수입 신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술 소비의 고급화 추세를 국내에서 소화하기 위한 고급술의 개발로 수입주류에 대한 경쟁력의 향상이 시급한 실정이다.

(2) 주류유통업 현황

우리나라의 주류유통시장은 다른 재화의 유통시장과 마찬가지로 도매업과 소매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러한 유통기관의 종류 및 사업범위는 정부의 면허제도에 의하여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주류도매업은 종합주류도매업, 그리고 슈퍼연쇄점 본부 및 지부, 농협, 축협 등의 중개업, 수출입중개업, 수입주류전문도매업 등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주류생산량의 70~80%가 종합주류도매장과 슈퍼연쇄점 본·지부를 통하여 유통되고 있다. 소주와 맥주의 경우 종합주류도매상은 주류를 음식점·유흥업소 등에 유통시키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슈퍼연쇄점은 가계소비용 주류의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3. 주류산업 규제 완화

지난 수십년 동안 주류산업은 정부의 매우 엄격한 규제 하에 있다가 1990년 이후 주류도매업 면허의 부분적인 개방을 시작으로 그 규제가 점차 완화되어가고 있다.

(1) 주류산업규제와 이의 완화

가. 진입규제

「주세 사무처리 규정」 제7조에 의하면 탁주, 주정의 신규제조면허는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주류는 자격요건을 구비하여 신청하면 면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의 구체적인 내용은 1991년 9월 1일부로 맥주, 위스키등의 면허를 개방한 것이고 1993년 3월 1일부로 희석식 소주, 일반증류주, 약주의 면허를 개방함으로써 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에 대하여 제조면허와 주류의 종류별 규제를 폐지한 것이다.

단지 영세업체의 난립과 주류의 질저하를 막기 위하여 주류별로 제조업의 법인화와 이의 자본금의 하한선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주류업자의 타주종 제조의 겸업에 대한 요건을 두고 있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후 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생산규제

주정 및 주류의 생산을 개별기업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정부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국세청장은 주정에 대하여 매년 수요량을 감안하여 당해년도의 생산량 및 소요원료의 종류와 수량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과거 제조장별로 시설가동율에 관계없이 전년도 출하 실적을 기준으로 할당하도록 되어 있었던 주정의 할당제도는 1993년 1월 1일부로 폐지할 예정으로 있다.

다. 지역판매제도

소주는 지역판매제도에 의해서 유통되어 왔으나 1992년 1월 1일부터 그 규정이 폐지되어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전국을 대상으로 판매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었다.

라. 주류가격

주정은 명령고시가격으로 제조장 출고가격 또는 판매장 판매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국세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주정 이외의 제조장 출고가격은 신고제도로 자체가격 설정근거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세무행정체계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일반적으로 주류가격은 제조원가를 기초로 하여 일정률의 마진과 각종세금이 가산되어 출고가격이 결정된다.

한편 제조장에서 출고된 제품이 도·소매점이나 슈퍼연쇄점을 거치면서 소비자가격은 각단계의 마진만큼 오르게 되는데 도매마진은 용도별(소매용, 유통업소용),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용도간, 지역간의 불법적인 유통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2) 주류산업 규제완화의 폐해

정부가 20여년간 주류의 신규제조면허를 동결한 결과 정부의 면허가 이권화하고 기존의 주류제조업체는 정부의 보호속에 안주하여 다양한 새로운 술의 개발노력을 등한시 하여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변화하는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주류의 수입초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정부의 주류제조업 면허제도하에서는 기업의 신규진입가능성이 배제되어 주류별 시장의 독과점화가 발생하여 유통계열화, 포장용기의 개선, 각종 광고활동등과 같은 비가격 경쟁을 통하여 판매경쟁을 하게 된다.

그리고 원료배정 제도하에서는 특정기업에 대한

원료배정을 전년도에 매출액에 근거하기 때문에 더 많은 원료를 배정받기 위한 과잉 생산이 발생하고 이를 시장에서 소화시키기 위하여 제조기업은 유통조직에 대한 시장력을 행사하게 되며 그 결과 정당한 경쟁질서를 깨뜨리는 파행적 거래관행이 발생한다. 즉 제조회사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밀어내기, 비인기품목의 끼워팔기 등으로 발생한 적체물량을 도매상들이 자금회수를 위하여 출고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매하는 덩핑시장이 형성되고 이와 더불어 과세 표준을 줄이기 위한 무자료 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소주의 경우에는 특정 브랜드의 선호 경향으로 인한 도매상들의 물량확보 노력이 공급부족 현상을 야기시켜 무면허 시장에서 가격상승을 가져오며, 이러한 가격상승은 지방에서 유통되는 특정회사 제품이 서울의 무면허 시장으로 역류되는 현상을 낳고 있다.

(3) 주류산업 규제완화의 기대효과

주류산업에서 면허가 개방되면 기업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기업 내부적으로는 가격 경쟁력의 제고를 위하여 비용절감을 위한 경영합리화 노력의 증대로 내부적인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하는 새로운 술의 개발 및 기존 주류의 품질 향상, 비인기 주류의 폐업등으로 전반적인 주류산업의 대외 경쟁력이 제고되어 임박한 주류시장의 대외개방에 따른 외국기업의 국내잠식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수입초과 현상의 둔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1개 주조장 1개 주류원칙의 탈피로 제조장 1개소에서 유사 주류를 생산할 수 있게 되어 현재의 과잉생산시설 문제가 극복되고 시설의 현대화를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주정배정 제도가 폐지될 경우 제조기업은 수요에 따라 생산량을 조절함으로써 재고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 생산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소비자선택에 의한 상품경쟁을 통해 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게 될것이다. 또한 지역판매제도의 폐지로 좀더 건전한 거래질서가 정립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주류산업 발전과제 및 대책

1993년 3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탁주·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의 제조면허 개방과 그후에 실시 될 것으로 예상되는 탁주·주정의 제조면허 개방이 목적하는 바 효과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건전한 경쟁 환경의 조성이 중요하다 하겠다.

일반적으로 법률적 진입장벽이 제거된다 해도 그것이 곧 경쟁의 증가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며 약탈적 가격정책과 같은 더 완고한 경제적 진입장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규제완화는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일방적인 축소와 철회로 끝나서는 안되고 건전한 경쟁여건의 조성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종래의 무차별적이고 무원칙적인 규제의 결과 많은 폐해가 발생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향후의 규제완화가 무차별적이고 무원칙적으로 추진되게 된다면 이에 못지 않은 또다른 형태의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보완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들면 경쟁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시장지배적인 기존기업에 대해서 비대칭적으로 규제를 할것인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대칭규제의 선례로는 국제통신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면서 신규 진입기업인 데이콤에 대하여 경쟁력을 갖출때까지 기존기업인 한국통신보다 낮은 전화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을 들 수 있다.

주류제조업은 대부분이 영세업체이나 소주, 맥주, 위스키등 일부 주류의 경우 소수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희석식 소주의 경우 원료배정제도와 지역판매제도의 폐지로 과당경쟁이 예상되며 이에따른 군소업체가 도산하는 등의 문제점이 우려되므로 자생력을 기를때까지 다

수의 군소업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정의 공동판매 제도하에서는 주정의 공급독점체제로 인하여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경쟁촉진 및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또한 주류 제조면허의 개방에 따른 과당경쟁의 심화로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주류품질의 저하가 우려되는바 제조장에 대한 기술지도 및 검사를 엄격히 하는 등의 주질관리의 철저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그리고 종합 주류도매업 및 슈퍼연쇄점등으로 계통을 이루는 주류유통에 있어서 주류창구 다원화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생산자와의 상대적 지위저하에서 오는 구조적 모순으로 시장지배력을 갖는 대기업들의 밀어내기, 끼워팔기 등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도매상들은 거래 제조사의 보복이 두려워 경쟁사의 제품에 대한 보이콧을 자행하고 있는바 이러한 도매상의 보이콧행위는 경쟁에 위협적인 요인이 되어 보이콧된 상품은 유통업소등에 출고가격으로 직거래되고 있어 경쟁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의 보다 강력한 적용이 요구되고 있으며 주류제조사는 유통업자나 일반 소매업자와 직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제조업이 독과점된 현재의 여건에서 유통업의 면허개방은 유통업에 대한 유력제조회사의 독과점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조업에서 독과점이 해소되기까지는 제조업의 유통업지배를 적극적으로 규제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주류용도별 표식제도는 징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이나 이는 재고관리 면에서 용도별 수요예측에 많은 어려움을 야기시킴에 따라 불필요한 재고가 늘게되어 기업의 자금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슈퍼연쇄점등의 주류가 불법유통되어 음식점에 유입되는 등 유통거래 질서 문란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유통창구의 간소화와 더불어 주류용도별 표식제도역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주류의 출고가격은 제품의 제조원가, 마진 및 세금을 합한 것이며 여기에 유통마진이 추가되어 일반 소비자 가격이 결정된다. 주세는 각국에서 종량세, 종가세 등 여러 방법으로 부과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가 종가세로 과세되고 있다. 종가세는 종량세보다 세액산출이 복잡하며 용기개발 등과 같은 기술개발이 원가부담을 이유로 회피되는 문제점이 발견되나 세수의 구조적 신축성, 세금부담의 공평성등의 장점이 있다. 따라서 현행 종가세제도는 그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주세과세 항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기업의 창의적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의 개성화 및 시장의 개

방화에 대비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또한 현행세제는 주류별로 세율이 차등적용되고 있으나 적용세율이 소비패턴이나 경제여건의 변화를 반영치 못하여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향후 주류시장 개방에 대비해서도 미국·영국 등과 같이 알콜함량에 따른 세율조정 방법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적용세율을 여건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종래의 세수위주의 조세행정을 지양하고 주질향상과 주조업자의 기업성 증진에 도움이 될것이기 때문이다.

毋偏信而爲奸所欺，毋自任而爲氣所使。

毋以己之長而形人之短，毋因己之拙而忌人之能。

한쪽만을 믿어 간사한 사람에게 속지 말고,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믿어 객기의 부림을 받지 말라.

자기의 장점으로써 남의 단점을 드러내지 말고,

자기의 졸렬함으로 인해 남의 능함을 시기하지 말라.

— 채근담(菜根譚) 중에서 —